

신뢰받는 심사
열린 전문성
함께하는 소통



2025년 심사 재점검 업무 안내

2025.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1. 심사 재점검 정의

- 심사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횟수 초과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는 업무입니다.
-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제3·5·6호

-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II

심사 재점검 항목

순번	점검유형 (항목수)	점검 항목
1	신규 항목(1항목)	장애인 치과 가산 점검
2	연 단위 등 누적점검 (11항목)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산정횟수 점검
3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
4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산정횟수 점검
6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7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8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점검
9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10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11		항CCP항체 검사 산정횟수 점검
12		헤모글로빈A1c 검사 산정횟수 점검
13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8항목)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14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 점검
15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제기관 점검
16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17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추가연계
18		위탁진료 중복점검
19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20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21	중복 점검 (3항목)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22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23		자보·건보 중복점검
24	청구오류 점검 (5항목)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25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26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27		의과 청구착오 재점검
28		항목별 재점검(14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안내 > 심사 재점검 > 재점검 항목

III

심사 재점검 신규 항목

□ 장애인 치과 가산 점검 [점검유형: 청구오류 점검]

- 대상: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 산정 가능한 일부 장애인 자격(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외 청구건
-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제2024-51호, 2024. 3. 27.)

※ (주요내용) 치과 진료 시 4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일부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 확대 및 가산을 상향

① (가산 장애인 유형)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을 상향) 100% → 300%

2024. 3. 27. 전		2024. 3. 27. 이후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UH010 -UH051	주 : 1. <생략>	UH500 -UH550	주 : 1. <현행과 같음>
UH052 UH053 UH060 UH074 UH079 UH075 -UH101 (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UH232 UH233 UH390	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23-1」, 「차-39」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51 -UH582	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411 -UH417	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83 -UH641	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 「차-42」, 「차-43」, 「차-45」, 「차-46」, 「차-47」, 「차-50」, 「차-52」, 「차-53」, 「차-55」, 「차-56」, 「차-59」, 「

2024. 3. 27. 전		2024. 3. 27. 이후	
			차-61, 「차-62」, 「차-63」, 「차-66」, 「차-67」, 「차-69」, 「차-71」, 「차-72」, 「차-73」, 「차-78-1」, 「차-78-2」, 「차-84-1」, 「차-97」, 「차-98」, 「차-44」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 를 별도 산정한다.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신설>	<신설>	UH642 -UH663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 를 별도 산정한다.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신설>	<신설>	UH664 -UH674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 를 별도 산정한다.

-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23-80호, 2023. 4. 27.)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 착오청구 사례

<사례> 치과 가산 수가 산정 가능한 일부 장애인 자격(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외 청구

- 수진자 ‘김○○’ (장애유형 시각 장애인) 치과 진료 후 아래와 같이 청구한 경우,

요양개시일	진료내역	1회 투약	일투	총투	재점검 결과
2024.5.15.	(UH583) 발치술[1치당]-유치-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	1	1	1	조정
	(AP911) 치과 단순 안전관찰료(1일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	1	1	1	조정

⇒ 해당 수가 청구 대상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중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정**